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공중위생관리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관련 수수료에 대하여 삭제 및 신설 (안 별표 제2호)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삭제

- 숙박, 식품환경, 공중목욕탕 영업 허가증 재교부 수수료
-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설

- 위생처리업 신고 : 7,000원
- 위생처리업 지위승계·변경신고 : 3,500원
- 세척제제조업 신고 : 20,000원
- 세척제제조업 지위승계·변경신고 : 10,000원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 7,000원
-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지위승계·변경신고 : 3,500원

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함(안 별표 제5호)

○ 문서 등(도면·카드·사진 등)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 '장' → '시간'
- 1건(10장 기준) : 200원,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 '장' → '시간'
- 1건(10장 기준) : 200원,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및 신설
 - 1건(10장 기준) : 250원,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 1건 1MB 이내 : 무료,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부과
 - 전자파일 변환(스캔)시 사본 수수료의 1/2 산정,
부분공개를 위한 지움+스캔 변환 시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신설)
- 전자파일(오디오, 비디오)의 ‘복제’ 수수료 기준 편경
 - 10분마다 3,000원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 수수료 중 100원 단위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 등 기타 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 2015. 4. ~ 5. (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별 표] (개정 2015.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생 략)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9종)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7) (생 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36) (생 략)			
(37) 위생처리업 신고	1건	7,000원	〈신 설〉
(3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신 설〉
(39)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신 설〉
(40)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신 설〉
(4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7,000원	〈신 설〉
(42)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신 설〉

3. ~ 4.(생 략)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 표]</p> <p>1. (생 략)</p>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9종)</p>	<p>[별 표]</p> <p>1. (현행과 같음)</p> <p>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50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4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td> </tr> <tr> <td>(1) ~ (4)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5)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원</td> <td></td> </tr> <tr> <td>(6)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원</td> <td></td> </tr> <tr> <td>(7)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원</td> <td></td> </tr> <tr> <td>(8) ~ (37)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td> </tr> <tr> <td>(1)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2)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550원</td> <td></td> </tr> <tr> <td>(3) ~ (36) (생 략)</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r> <td><신 설></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5)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50원		(7)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8) ~ (37) (생 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생 략)				(2)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	1건	550원		(3) ~ (3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종 목</th> <th style="width: 10%;">단 위</th> <th style="width: 15%;">금 액</th> <th style="width: 4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td> </tr> <tr> <td>(1) ~ (4)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5) <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6) <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7) <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8) ~ (37)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td> </tr> <tr> <td>(1)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2) <삭 제></td> <td></td> <td></td> <td></td> </tr> <tr> <td>(3) ~ (36) (현행과 같음)</td> <td></td> <td></td> <td></td> </tr> <tr> <td>(37) 위생처리업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 <td></td> </tr> <tr> <td>(3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원</td> <td></td> </tr> <tr> <td>(39) 세척제제조업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td> <td></td> </tr> <tr> <td>(40)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원</td> <td></td> </tr> <tr> <td>(4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0원</td> <td></td> </tr> <tr> <td>(42)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1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3,500원</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 (37) (현행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36) (현행과 같음)				(37) 위생처리업 신고	1건	7,000원		(3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9)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40)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7,000원		(42)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4) (생 략)																																																																																																																																									
(5)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50원																																																																																																																																							
(7) 공중목욕탕 영업허가증 재교부	1건	550원																																																																																																																																							
(8) ~ (37) (생 략)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생 략)																																																																																																																																									
(2)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	1건	550원																																																																																																																																							
(3) ~ (3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 (37) (현행과 같음)																																																																																																																																									
나. 신고·신청에 관한사항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 (36) (현행과 같음)																																																																																																																																									
(37) 위생처리업 신고	1건	7,000원																																																																																																																																							
(38)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9)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0,000원																																																																																																																																							
(40)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41)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1건	7,000원																																																																																																																																							
(42)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p>3.~ 4. (생 략)</p>	<p>3.~ 4. (현행과 같음)</p>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신청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신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20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 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 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등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 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 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 마다 100원	○사본(종이 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250원 -10매 초과 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1건이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 마다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 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매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5.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p>녹화 테이프 (비디오)</p>	<p>○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 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 마다 700원</p>	<p>○복제 -1편이 1롤 이상인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시청 -1편: 1,500원 · 30분초과 시 10분 마다 500원</p>	<p>○복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p>	<p>○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p> <p>○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p>	<p>○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p> <p>○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영화 필름</p>	<p>○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 마다 3,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 마다 2,000원</p>				<p>전자파일</p>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p>	<p>○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p>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운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p>
<p>슬라이드</p>	<p>○시청 -1컷마다 200원</p>	<p>○복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시청 -1컷마다 200원</p>				
<p>마이크로 필름</p>	<p>○열람 -1건 (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 마다 100원</p>	<p>○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사진필름</p>	<p>○열람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p>	<p>○인화(필름) -1컷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열람 -1매: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p>	<p>○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필름) -1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p>
<p><신 설></p>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은 서대문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 정책기획담당관 정책평가팀 박진영(☎02-330-1089)
-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 신유자(☎02-330-8901)

관계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 1999.8.9.] [법률 제5839호, 1999.2.8.,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 제8조 (생략)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1.30.]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2015.1.30., 일부개정]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00.3.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1997.12.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 1997.12.17., 일부개정]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별표 9와 같으며, 그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제948호, 2012.5.4.]

제8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그 금액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